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2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2.

발 의 자 : 한기호 · 윤한홍 · 안상훈
유용원 · 임종득 · 백종현
강승규 · 고동진 · 김미애
윤상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원가를 방산업체·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,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(이하 “업체”라 한다)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업체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원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, 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임에도,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

로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제3항 신설).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1. 「관세법」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·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
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8조(부당이득의 환수 등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8조(부당이득의 환수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 1. 「관세법」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·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 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